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7. 7 선고 2018가단5160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

변 론 종 결 2021. 6. 2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1. 15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. 11. 15. 접수 제65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2. 10. 23. C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3. 6. 30., 이자율 연 18%, 지연손해금율 연 30%로 정하여 대여하였다. 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. 11. 15.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그러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C이 2012. 10. 23.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3. 6. 30., 이자율 연 18%, 지연손해금율 연 30%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D 작성의 2012년 제895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오히려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E 주식회사(이하 'E'이라 한다)의 주식에 의한 대물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,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① C과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2012. 10. 25. 'C이 2012. 10. 23. 차용금 2억 원을 2013. 6. 30.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C이 소유한 E 주식 45% 중 2억 6,000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'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면서 공증인 D 사무소 2012년 제2087호로 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.

② 그 후 E 주식은 1,000주에서 21,000주로 증자되었고, C은 변제기인 2013. 6. 30.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.

③ C은 2013. 8. 21. 원고에게 E 총 주식 중 20%에 해당하는 4,200주를 양도하였고, 원고는 그 무렵 C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수기로 '변제기일 불이행으로 주식 10%를 인수하였음. A'라고 기재하여 주는 한편 2013. 8. 29. C에게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. 위 '변제기일 불이행' 부분에서 말하는 채무불이행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2억 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뜻하는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구는 원고가 C에게 추가로 지급한 2억 원에 대한 주식 10%의 양도와 구분하여 기존의 2억 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채무에 갈음하여 주식 10%를 인수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.

④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불365호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19. 4. 18. 'C이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여 신청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'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.

⑤ 한편, C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가단22073호로 위 2억 원의 대여금 채무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7. 21. 'C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2년 제895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2억 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'는 내용으로 C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.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21. 5. 13.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아영